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04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045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568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3248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판결 선고 2024. 11. 14.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5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가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다른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일 때에는 소멸하는 채무와 새로 발생하는 채무를 함께 소극재산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F은행과 E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및 F은행과 E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함께 포함하였다(원심이 인정한 F은행과 E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서 원고의 대위변제 후 위 은행들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고가 B의 F은행과 E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위 구상금 채무와 각 대출금 채무의 관계, 즉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각 대출금 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를 심리한 다음 소극재산에 포함될 채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와 그 후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모두 B의 소극재산에 포함함으로써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흥구

대법관오석준

주심대법관엄상필

대법관이숙연